

#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 결정

## 1. 인적사항

- 성 명 : 최 준 희 (1985.10.26일생)
- 소 속 : 인천시설관리공단
- 경기종목 : 보디빌딩

## 2. 위반사항

○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도핑방지규정(이하“규정”) 제6조제1항(선수의 시료내에 금지약물,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), 제6조제2항(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시도), 제6조제6항(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) 위반

## 3. 결정사항

가. 규정 제6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6조제6항의 위반이 인정된다.

나. 규정 제47조(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, 사용 또는 사용시도,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처분), 제54조(자격정지기간이 연장되는 가중처벌요건)에 의거하여 4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한다.

다. 자격정지기간은 제재결정일인 **2013. 9. 25**부터 **2017. 9. 24**까지 이다.

라. 규정 제56조(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이후 경기결과의 자격박탈)에 의거하여 선수는 시료채취일 이후 발생한 모든 경기결과에 있어서 자격 박탈된다. 끝.